

「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」 모집 공고

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추진 역량이 있는 기업 대상으로 「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」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. 3. 9.

한국환경공단 이사장

1. 공고 개요

○ (사업명) 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

※ 본 공고문은 주요내용 안내자료이며,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·관리지침 필히 참조

○ (지원대상) 협력국 내 환경분야(기후변화 대응, 에너지전환, 재생에너지, 폐기물, 자원순환 등)를 포함하는 국제감축사업의 감축설비 투자지원 및 타당성조사 지원

투자지원사업	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를 위한 투자비용
타당성조사사업	예비 타당성조사(예타) 또는 본 타당성조사(본타) 수행 비용

○ (공고 및 접수기간)

지원유형	모집차수	접수기간
투자지원사업	1차	'26.3.9.(월)~3.31.(화) 18:00
	2차	'26.5.1.(금)~6.30(화) 18:00
	3차	'26.7.1.(수)~8.31.(월) 18:00
	4차(필요 시)	'26.9.1.(화)~
타당성조사사업	-	'26.3.18.(수)~4.10.(금) 18:00

※ 투자지원사업의 경우 동일 사업은 3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

○ (공모 방법)

- 기후부(알림·홍보-뉴스·공지-공지·공고), 공단(열린공간-공지사항)

○ (지원규모) 총 사업비 2,830 백만원 규모

대상		규모	선정한도	지원비율	지원한도 (1건당 최대)
투자지원사업		2건 이내	우선 선정	총 사업비 중 투자비의 최대 50%	100억원
타당성조사 사업	예타	5건 내외	25억원 이내	타당성조사 비용의 최대 90%	3억원
	본타				5억원

※ 당해연도 예산 및 신청 상황에 따라 모집·선정은 조기 종료 또는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, 지원규모·선정 건수는 사전검토, 심의결과 등을 고려 변동 가능

2. 지원 세부사항

(1) 지원범위

○ (지원분야) 환경분야를 포함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(예시 외 지원가능)

환경분야(기후변화 대응, 에너지전환, 재생에너지, 폐기물, 자원순환 등) 예시

- ①매립가스 소각 ②매립가스 발전 ③팜오일 폐기물.폐수 처리 ④퇴비화 ⑤분뇨처리
 ⑥폐기물 처리 ⑦매립/바이오가스 공급망을 통한 연료전환 ⑧매립지 공기주입
 ⑨산업폐기물 ⑩폐수처리(혐기성) ⑪폐수처리(호기성) ⑫농업부산물 연료화 ⑬산림부산물 연료화
 ⑭바이오매스 연료화 ⑮바이오디젤 ⑯소수력 발전 ⑰수력 발전 ⑱조력 발전
 ⑲복합 신재생(다목적 댐 활용 수상태양광 발전 등)

○ (지원기간) 공단-선정기업 협약 체결부터 사업별 종료까지

투자지원사업	○ 협약 체결일로부터 예정 가능한 설치 기간(최대 3년)
타당성조사사업	○ 예타 : 6개월 이내, 본타 : 12개월 이내 ※ 사업별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연장 협의 가능(예타/본타 공통)

○ (지원항목) 총 사업비(아래 지원항목의 합계)에 지원비율 적용하여 정부지원금 산정

투자지원사업	○ 온실가스 감축설비(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) 구입비, 설치공사비, 설계비, 감리비, 시운전비 등
타당성조사사업	○ 직접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, 국내·외 여비, 유인물비, 회의비(자문료, 통역비), 임차료, 위탁용역사업비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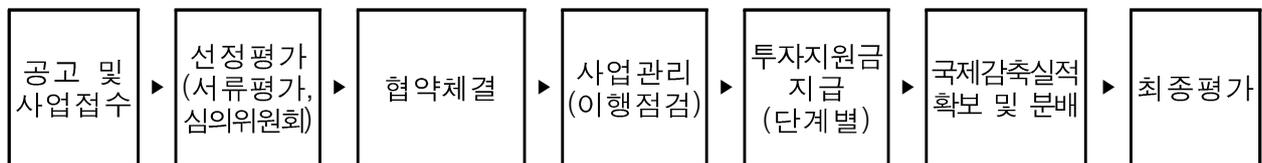
- (민간투자금) 총 사업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
- (타당성 조사 결과물) 최종보고서, 상대국과의 협의 증빙자료, PIN(예타), PDD 및 검증기관 타당성평가 결과 보고서(본타)

(2)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

- (신청자격) 국내기업 등(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기업, 비영리법인, 그 밖의 법인,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(외국법인),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)
- (참여제한) 신청기업이 관리지침 제14조(신청자격 및 제한)에 해당할 경우 참여제한 및 신청서 반려

(3) 추진절차 및 일정

○ (투자지원사업 추진절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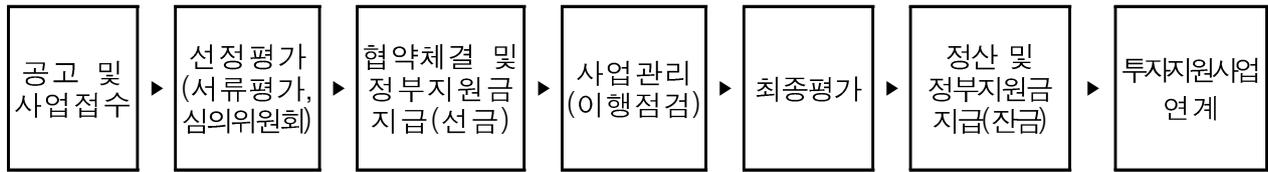


○ (투자지원사업 추진일정)

순 번	일 정	추진절차
1	3.9(월)	공고 및 접수 개시
2	3.31(화)	접수 마감 18시
3	~4월 17일(금)	사전검토 및 서류평가
4	~4월 28일(화)	평가위원회 (사업계획 발표 포함)
5	5월1주	지원기업-공단 간 사업별 추진회의
6	5월2주	업무협약 체결

※ 평가위원회 개최 시 사업계획에 대한 기업 PPT 발표 예정,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○ (타당성조사사업 추진절차)



○ (타당성 조사 추진일정)

순 번	일 정	추진절차
1	3.18(수)	공고 및 접수 개시
2	4.10(금)	접수 마감 18시
3	~5월 15일(금)	사전검토 및 서류평가
4	~5월 22일(금)	평가위원회 (사업계획 발표 포함)
5	~5월 29일(금)	지원기업-공단 간 사업별 추진회의
6	6월1주	업무협약 체결
8	6월3주	정부지원금 지급(선금)

※ 평가위원회 개최 시 사업계획에 대한 기업 PPT 발표 예정,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(4) 신청방법

○ (제출방법) 전자메일 접수

- 전자메일 제출파일 (압축파일, 파일명 : 제출일_주관기업명.zip)

ghg@keco.or.kr

※ 이메일로만 접수하며, 마감 시한까지 수신된 메일만 인정. 웹하드·클라우드 링크 불가, 대용량 파일 링크는 가능하며,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- (제출 양식)

투자지원사업	덧붙임 3, 5 양식 (관리지침 별지 제1호, 제4호의1서식)
타당성조사사업	덧붙임 4, 5 양식 (관리지침 별지 제1호, 제4호의2서식)

(4) 문의처

○ 한국환경공단 글로벌협력처 국제환경협력사업부

○ 문의/상담 등은 이메일(ghg@keco.or.kr)을 통해 사전 문의 필수

- (전화) 032-590-3157, 3179, 3178

○ (투자지원금 지급 방식) 지침 제20조, 별표 10

구 분	단계별 수행내용	지급한도
1단계	○ 착공 및 기반공사 완료 ○ 주요 설비 반입 및 고정 완료	투자지원금의 20%
2단계	○ 전체 감축설비 설치 완료 (기계·전기·배관 포함 전 공정 설치 완료)	투자지원금의 20%
3단계	○ 시운전 완료	투자지원금의 40%
4단계	○ 국제감축실적(ITMOs) 최초 이전	투자지원금의 20%

※ 다만, 사업 대상국 관련 정부로부터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허가서(Letter of Authorization)를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, 해당 확보 시점의 공정 단계에 한하여 지급한도에 20%를 추가 지급할 수 있음

○ (사업신청서 사전검토) 지침 제15조

- 사전검토 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신청기업이 7일 이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

투자지원사업	○ 예타/본타 보고서 제출 필요, 지원기간 내 감축설비 설치가 가능할 것
타당성조사	○ 본타 지원사업은 예타를 기 완료한 사업으로서, 예타 보고서 등 제출 필요

※ 사전검토 및 서류평가 결과 현저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

○ (선정평가 기준) 지침 제16조, 별표 4의1 및 4의 2

평가기준	신청기업의 적정성 (20점)	(1) 국내·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 실적 (5점) (2) 해외 사업 수행 실적 (5점) (3)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(10점)
	기후변화 기본협정 체결국 (10점)	(1) 기본협정 체결국 및 가서명국 ('25.11월 기준)
		(2) 파리협정 제6조 이행을 위한 협력 약정 체결국 ('26.2월 기준)
	정성평가 (70)	사업의 적정성(30점/35점), 국제감축사업 진행(30점)/연계 가능성(25점), 사업 추진효과(10점)
선정방법	심의회위원회 평가 결과, 위원별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업 (최고/최저 점수 제외) 중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	
결과통지	선정결과 개별 통보(공문 발송)	

※ 신용평가등급은 공고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평가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함

- (협약 및 이행 보증) 지침 제17조, 별지 제6호의1 및 제6호의2 서식
 -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은 공단과 업무협약 체결

공통 사항 (투자지원/타당성)	○ 협약 이행 보증서(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보증서)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
투자지원	○ 설치기간 이후(양도 개시 이후)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용 보험증권 등을 제출할 수 있음

- (정부지원금 신청) 지침 제20조
 - 정부지원금 신청 시에는 정부지원금 반환 의무 이행 보증(보험)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
- (비용인정 기준) 지침 제3조, 별표 3의 1, 별표 3의 3
 - 투자지원사업의 경우 운영비(컨설팅비, 행정비용, 인건비, 유지관리비 등), 토지구입비 및 시설철거비 등 기타 비용 지원 불가
- (후속사업 연계)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기후부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 본타 또는 투자지원사업으로 우선 연계 추진할 수 있음
- (규정 준수) 지원기업은 「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」을 숙지하고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
 -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이 부담
 - 단계별 수행 사항이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
- (강화기준 적용례) 강화된 제재조치 및 감축실적 분배는 시행일 이후 협약한 사업에 적용

- (감축실적 발행 절차) 지원기업은 감축설비 설치 완료 후 국제감축실적에 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보고하고 감축실적 발행 절차 이행
- (감축실적 분배 기준) 지침 제9장, 별표 6, 별지 제6호의1 서식
 -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은 공단과 지원기업간에 분배하며, 공단이 분배받아야 하는 국제감축실적(양)은 지급된 정부지원금 대비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

구 분	고정형	변동형
협약체결시점 지원기업 결정	· 연간 국제감축실적 분배 계획상 투자지원금 상환액을 협약 체결 시점의 국제감축실적 가격으로 나누어 산정	· 연간 국제감축실적 분배 계획상 투자지원금 상환액*을 국제감축 실적 발급 시점의 국제감축실적 가격으로 나누어 산정

* 변동형 분배방식 선택시 연간 국제감축실적 분배 계획상 투자지원금 상환액은 총 투자지원금 지급 완료 시점에서부터 국제감축실적 발급 시점까지의 경과일수를 고려한 대표금리 (발급일자 기준 전일부터 직전 1년간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)로 할증하여 산정

※ 국제감축실적 가격은 투자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시 결정

□ 설명회 개요

- (일시) '26. 3. 20.(금), 13:30~16:30
- (장소) 대한상공회의소(서울) 국제회의장(B2)
- (주최)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, 관계부처* (주관) 한국환경공단
* 기후부, 산업부, 외교부, 국토부, 해수부, 산림청
- (참석) 기후대응위 및 관계부처, 전담기관, 국제감축 관심기업 및 공공기관, 금융기관, 국제기구 등 약 200여명
- (주요내용) '26년 부처별 국제감축사업 지원내용, 양자협정 체결 현황, 금융상품(보험 등) 및 국제기구 연계사업 소개 등

□ 세부 진행계획

※ 사회자: 기후대응위 국제감축팀장

시 간	내 용	비 고
13:30~13:35 (5')	개회 및 일정안내	사회자
13:35~13:40 (5')	인사말씀	기후대응위 사무처
13:40-14:50 (70')	① 양자협정 체결 현황 및 향후 계획(10')	외교부
	② '26년 부처별 국제감축사업 지원 내용(60')	산업부, 국토부 해수부, 산림청
14:50~15:10 (20')	휴식시간	-
15:10~16:00 (50')	① '26년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(20')	기후부
	② 국제감축 보험상품 및 국제기구 연계사업(30')	무역보험공사, GGI
16:00 ~ 16:25 (25')	질의응답	참석자 전체
16:25~16:30 (5')	마무리 및 폐회	사회자

* 세부 일정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- (참가신청) QR코드 연결 접속 주소에서 신청서 제출(3/16, 13시까지)

사전등록 신청



Q. 중소·중견기업만 신청 가능합니까?

A. 아닙니다.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발굴·추진할 역량이 있는 국내기업은 **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.** (대기업, 공공기관 포함)
단, 공고문에 게시된 **신청제한 요건**에 해당될 경우, **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**

Q. 기업분류에 따라 지원규모의 차이가 있나요?

A. 아닙니다. 투자지원사업은 총사업비 중 투자비의 50% 이내로 지원하고, 타당성조사 사업은 조사비용의 90% 이내로 지원합니다. 신청상황 및 예산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Q. 동일 기업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A. 가능합니다. 다만, 사업별로 진행상황에 따라 **예타/본타/투자 중 1개의** 지원사업을 **신청**하셔야 합니다. 예를 들어 동일한 사업에 대해 예타와 본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Q. 선정평가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
A. 심의위원회 이후 사업선정 결과를 **신청기업에게 개별 통보** 예정입니다.

Q. 정부지원금 산정방법은?

A. **(예시1)** 투자 지원대상 사업의 총 사업비가 300억원이고 이 중 시설설치 투자비가 250억원, 총 운영비가 50억원(연간 5억원, 10년 운영)일 경우, 시설설치 투자비인 250억원의 50% = 125억원이거나, 지원한도(100억원)를 초과하므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, 총 사업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설치 투자비 및 운영비 200억원은 민간 부담

(예시2) 투자 지원대상 사업의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고 이 중 시설설치 투자비가 80억원, 총 운영비가 20억원(연간 2억원, 10년 운영)일 경우, 시설설치 투자비인 80억원의 50% = 40억이며, 지원한도(100억원) 이 내이므로 최대 40억 지원하고, 총 사업비에서 투자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설치 투자비 및 운영비 60억원은 민간 부담

(예시3) 예타 지원대상 사업의 총 조사비용 5억원으로 신청한 경우, 최대 지원비율(90%)은 4.5억원이거나, 지원한도(3억원)를 초과하므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, 총 조사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2억원은 민간 부담

(예시4) 본타 지원대상 사업의 총 조사비용 7억원으로 신청한 경우, 최대 지원비율(90%)은 6.3억이며, 지원한도(5억원)이내 이므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, 총 조사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2억원은 민간 부담

<투자지원 관련>

Q. 국가 간 감축 실적 배분,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을 위한 취소 등은 국제감축실적 분배시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?

A. 국제감축실적 총 발급량*에서 국가간 감축 실적 배분 및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 등을 위해 취소한 국제감축실적을 제외한 확보량에 대해 위탁·전담기관과 지원기업간 감축실적을 분배하게 됩니다.

* 감축 실적 배분,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을 위한 취소 등의 경우 양자협력 및 사업 초기시점 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협약시 총 예상 감축량 기준 분배량을 사전 계산

Q. 최종선정 이후 사업취소가 가능한가요?

A. 지원사업 선정 이후에도 사업추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천재지변, 상대국의 관련 법령 제·개정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업포기가 아닐 경우, 정부지원금 반납과 더불어 사업포기각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* 공모 신청이 불가하니, 사업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*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위반, 당초 계획(목적) 외 사용 등 위반사항에 따라 신청 제한기간 변동 가능

<타당성조사 지원 관련>

Q. 타당성조사 지원 규모 및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?

A. 타당성조사 지원은 예타, 본타 지원으로 구분되며, 기업이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 다만 사전검토 및 심의위원 평가, 대상사업 선정 완료 후 조정 단계를 거쳐 사업비와 지원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 지원 한도는 지원 사업 1건당 최대 예타 3억원, 본타 5억원까지 지원하며, 지원비율은 90% 이내입니다.

Q.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완료된 후 투자지원 사업으로 연계 가능한가요?

A. 타당성조사 신청시 후속 국제감축사업으로 연계 동의하여야 타당성조사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. 타당성조사를 통해 '성공' 판정을 받아 사업성이 확인된 사업은 기후부 국제감축 본타/투자지원 사업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습니다.